

코로나19 위기대응
기업R&D 긴급지원 방안

2020. 4. 9.

과학기술정보통신부

순 서

Ⅰ. 추진배경 1

Ⅱ. 기업 R&D 긴급지원 방안 2

1. 과학기술 분야 정부R&D 참여기업 부담금 완화

2. 정부납부기술료 감면 · 유예 · 면제

3. 참여기업의 인건비 산정 기준 완화

4. 출연(연)의 기업 지체상금 면제

5. 연구인프라 활용 지원

6. 정부 R&D 사업화 기업 공공시장 판로구축 지원

7. 중소기업 애로사항 컨설팅 지원

Ⅲ. 기대효과 7

Ⅰ. 추진배경

□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R&D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범부처 대책을 발표(4.8)함에 따라 이를 실행하기 위한 **과기정통부 조치계획**을 마련

○ 이에 더해, **과기정통부 추가 지원책**을 마련하여 시행

< 참고. 범부처 기업 R&D 부담 경감 주요내용 >

□ **민간부담금 축소, 인건비 지원** 확대 → **최대 2.2조원** 규모 지원

* (지원대상) 산업·중기·과기부 R&D 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중소·중견기업(총1.9만개)

❶ **(민간부담금)** **민간 부담비율을 축소**(최대 35%→20%)하고 **현금부담 비중도 대폭 완화**(최대 60%→10%) ⇒ 총 **1조원 지원효과**

❷ **(인건비)** 연구인력 유지를 위해 정부 지원대상으로 **기존인력 인건비도 인정** ⇒ **총 1.2조원 규모 지원효과**

* (현재) 신규채용 인건비만 지원 → (개선) 기존 인력도 인정

❸ **(기술료)** 금년 정부에 납부하는 **기술료 납부유예**(최대 2년) 또는 **감면**(최대 100%) ⇒ **총 600억원 규모 지원효과**

❹ **(재무요건)** 부채비율 등 **재무요건*** 적용 **금년 한시면제**

* (현재) 2년연속 부채비율 500% 이상, 유동비율 50% 미만 → R&D 중단 또는 신규사업 참여 불가

☞ **부담경감 조치**는 **4월중** 관련 **규정 개정 완료 후 즉시 시행**
* **내년도 R&D 편성시** 목표·연구기간·예산조정 등 **보완 조치**(관계부처)

Ⅱ. 기업 R&D 긴급지원 방안(안)

1. 과학기술 분야 정부R&D 참여기업 부담금 완화

○ **(기존)**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일정 비율의 연구개발비를 부담(현물 또는 현금)

※ (출연기준) 대기업 : 50%, 중견기업 40%, 중소기업 25%, (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 기준) 대기업 15%, 중견 13%, 중소 10%

- 단,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과기정통부 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별도의 기준에 따를 수 있음(공동관리 규정 제12조 3항 1호)

※ (과기정통부 처리규정 제22조3항) 필요시 과제의 특성에 따라 정부의 연구개발비 지원비율, 기업의 현금부담비율...을 조정할 수 있다.

○ **(지원방안)** '20년 계속 및 신규과제 대상으로, 참여기업이 중견기업 또는 중소기업인 경우, 참여기업의 부담금 및 현금 부담 기준을 **5%p 완화**하되, **세부 사업 특성에 맞게 추가 완화 등 조율 가능**

기존		⇨	개선	
출연기준	현금부담 기준		**출연기준**	**현금부담 기준**
▸ 중견기업 40% ▸ 중소기업 25%	▸ 중견기업 13% ▸ 중소기업 10%	5%p 인하	▸ **중견기업 35%** ▸ **중소기업 20%**	▸ **중견기업 8%** ▸ **중소기업 5%**

- **(공통기준 적용사업 예시)** 기업이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성과를 기술이전 받아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**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의 기술사업화 과제** 참여기업의 민간 부담금 및 현금부담 완화

※ (참여기업당 360만원↓) 과제예산 170백만원 기준, 현금부담 10%인 560만원 → 5%인 212만원

- **(추가 완화 사업 예시)** 지역대학-기업의 공동연구를 지원하는 지역혁신선도연구센터 등 **기초연구사업(선도연구센터)** 참여 기업의 **'20년 현금 부담금 한시적 면제**

※ ('20년 기준) 기업이 참여 중인 선도연구센터 46개, 총 현금부담금 28억원 규모

2. 정부납부기술료 감면 · 유예 · 면제

○ **(기술료 감면·유예)** 코로나19 사태로 경영악화 등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 정부납부기술료 감면·유예 추진

- 기술료 감면은 기업의 신청에 따라 가능하며(즉시), 감면이 가능한 **R&D사업 소관부서 검토 및 승인을 통해 허용**

※ (과기정통부 처리규정) 제38조⑦ 장관은 (필요사유가 발생할 경우) ...연구개발 성과 소유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신청에 따라 기술료 감면을 승인할 수 있다.

- 정부납부기술료의 납부기한 유예 추진('20년 4월 중 개정완료 추진)

○ **(기술료 면제) 각 사업별 검토**에 따라 추가로 정부납부기술료 면제 추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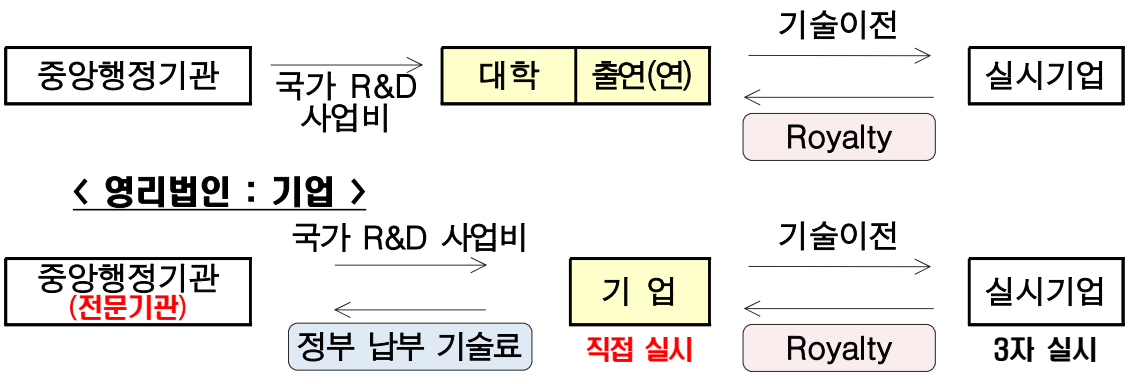
- **(대표사업 예시 ①)** 산·학·연 융합에 기반, 소재·부품·장비 핵심 품목 기술 자립을 위한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**소재혁신선도프로젝트사업의 정부납부기술료 면제**

※ (과기정통부 처리규정) 제38조⑤ 장관은 기초연구단계의 연구개발성과 등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개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...연구개발성과에 대해서는 기술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.

- **(대표사업 예시 ②)** 특구 기술사업화 과제 종료 후 납입하는 **정부납부기술료 면제 추진('20년 신규과제에 대해 면제 적용)**

※ '19년 특구육성사업 정부납부기술료 징수액 17억원

< 참고. 기술료 납입대상 >



3. 참여기업의 인건비 산정 기준 완화

○ **(기존)**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신규채용 인력에 대해서만 인건비로 계상 허용, 계속 인력에 대해서는 불가

○ **(인건비 산정 기준 완화)** '20년 예산에 한해, **중소·중견기업의 계속 인력**에 대해서도 **인건비 계상을 허용**하여 연구인력의 고용 유지 지원

※ (과기정통부 처리규정 별표 3, 인건비 계상 기준) 장관의 승인을 받은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인력의 인건비에 대해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 가능

4. 출연(연)의 기업 지체상금 한시적 면제

○ **(지체상금 부담완화)** 구매, 용역, 위탁과제 등 **출연(연) 발주 계약** 중 코로나19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**계약 목적물의 납품기한 도래 여부**에 따라 **'해당 기간'*만큼 지체상금 부담 완화**

* 해당기간 : 기재부「신종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 처리 지침」시달 시점(2.12)부터 적용

※ (관련규정) 국가계약법 제26조, 동법 시행령 제74조, 과기정통부 처리규정 제20조

※ 참고 :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6조(지체상금)

제26조(지체상금)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**정당한 이유 없이**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**지체상금을 내도록** 하여야 한다.
② 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금액, 납부방법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③ 제1항의 지체상금에 관하여는 제18조제3항 단서를 준용한다.

<납품기한 도래 여부에 따른 부담완화 방안>

기한구분	부담 완화 방안	기대효과	비고
미도래	계약/협약기간 연장 사전검토	불가피한 지체상금 발생 방지	계약연장가능시
도래	기성부분(기납부분) 인수 적극 검토 및 지체상금 산정 시 지연일수 비가산	외부요인으로 인한 지연 고려	계약연장불가시
경과	기발생한 지체상금 납부유예	現경영악화로 인한 부담 완화	-

- **(적용 예시 ①)** 목적 계약물의 **이행 기간 미도래시 출연(연)과 기업 간 계약변경**을 검토하여, 불가피한 지체상금 발생 방지

  * 예: '사회적 거리두기' 등으로 인한 위탁연구과제의 수행 일정 차질로 연구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연장 검토

- **(적용 예시 ②)** 목적물의 **납품 기한이 도래한 경우,** 필요시 기성부분(기납부분) 인수 적극 검토 및 향후 지체상금 부과를 할 경우 '해당 기간'만큼 **지연일수에서 제외 후 산정**

  * 예: 코로나19로 인한 업장 폐쇄 등 생산 차질로 인한 납품 지연된 경우, 기성부분을 우선 적극 인수토록 하고, 지체상금 산정 시 정상화에 소요된 기간을 지체일수에서 제외

- **(적용 예시 ③)**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를 겪는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코로나19 사태 이전 **기발생한 지체상금 납부기한 유예**

  * 예: 코로나19사태 이전에 발생한 지체상금을 대상으로, 기업활동 제한으로 경영악화를 겪는 경우 지체상금 납부 기한 유예(당사자간 협의)

5. 연구인프라 활용 지원

○ **(감염병 R&D 수행 지원)** 생명(연), 화학(연) 등 출연(연)이 보유한 생물안전시설(ABL3/BSL3)을 활용하여 감염병 진단, 백신 및 치료제 개발 기업 지원

- 생물안전시설 사용을 희망하는 기업 수요 조사 및 활용 지원 지속(3.6~)

○ **(R&D 수행 지원)** 기업이 연구개발을 원활히 수행 할 수 있도록 **정부 연구인프라 지원**

- **(출연(연) 시설·장비 활용)** 입주기업에 대한 부담 경감을 위한 이용료 및 보육료, 연구시설 공동활용 비용 감면, 연구비 조기집행 등 추진

  ※ KISTI 슈퍼컴퓨터 중소기업 우선 지원, 지자연 입주기업 6개월간 이용료 30% 감면, 생명연 창업보육센터 창업보육료 6개월간 20% 감면, 생기원 연구장비 및 시험분석 수수료 코로나 19 종료까지 10% 감면, ETRI 피해기업 대상 기업부담금 납부 면제, 철도연 시험선로 사용료 경감, 국보연 수수료 할인 및 연구비 조기 집행 등

- **(출연(연) 인력 활용)** 패밀리 기업 기술교육 무상지원, 기업의 신규 인력에 대해 현장에서 필요한 교육지원 등 R&D 전문인력 양성

6. 정부 R&D 사업화 기업 공공시장 판로구축 지원

○ (**지원방안**) **'혁신제품 지정제도'**를 통해 혁신성이 인정된 정부 R&D 성과물이 공공구매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①**기업수요 발굴**, ②**추가 공고**, ③**제품 심사기간 단축** 등 공공조달 대상기업 확대 및 구매연계 촉진

※ 기재부를 중심으로 공공 구매력을 활용한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**혁신제품(정부 R&D 제품, 민간시제품 등)**의 공공구매를 지원하는 혁신구매제도를 시행 중('19.7~)

- (**기업수요 발굴**) **신청·접수 가능한 기업 Pool***을 활용, **대상기업**에 **개별 안내**(전화·이메일 등)하여 혁신제품 지정제도 **참여**를 **활성화**

  * 과기정통부 R&D수행 1,541개사, 출연(연) 기술이전 2,089개사(중복제외) 등

- (**추가 공고**) 코로나19로 인한 **기업 업무 공백, 제품 긴급개발 가능성** 등을 **고려**하여 **제도 신청·접수 추가 공고**(당초 2.3. ~ 3.31이나, 4.30까지 추가 공고)

※ 단순 공고기간 연장 시 제품심사 지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추가 공고 추진

- (**심사기간 단축**) **심사일정 조정** 등 **혁신제품 지정 소요기간**을 **단축**(1개월)하고, **코로나19 관련 제품***은 **우선 심사****를 통해 **공공조달 연계** 속도 향상

  * 국민건강 : 마스크, 손 소독제, 체온계 / 확산방지 : 진단키트, 의료용 방호복, 고글 등

  ** (기존) 심사완료(6월), 지정예정공고(7월), 최종선정(8월) → **(우선심사) 최종선정(6월)**

- (**글로벌 진출**) **KAIST 글로벌 공공조달연구센터***를 통해 우수제품의 **해외 공공조달 시장**** **진출**을 위한 **컨설팅, 현지 네트워킹 연결 등 종합지원 강화**

  * 해외 공공조달 및 국제입찰 관련 교육 및 국내기업 컨설팅 지원 목적으로 설립('18.7월)되었으며 최근 신신제약 미국 공공조달시장 진출 성공('20) 등 성과도출

  ** 미국 조달시장 630조원, UN 20조원 등이며 최근 코로나 사태로 국내기술력 주목

7. 중소기업 애로사항 컨설팅 지원

○ (**기술지원 특별봉사단 운영**) **과총, 한림원**(과학기술·공학·의학), **산기협, 대덕연구개발특구기관장협의회** 등의 과학기술 지원 봉사단 운영

- 대구·경북 등 **피해지역 중소기업 애로기술 자문** 등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활동을 지원하는 봉사단 운영(3월4주~)

- 코로나-19 관련 국민들 궁금증 해소를 위해 **전문가·학회 중심**으로 **팩크체크와 과학적 정보전달 등 대국민 소통**(유튜브, 홈페이지 이용)

○ **(특구 기술주치의 파견)** 특구의 **고경력 과학기술인**을 **기술주치의로 육성**하여 기술애로를 겪는 **특구 기업에 자문·처방 서비스 지원**

- 연구인력 **인건비 지급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영세기업**에 대한 **우선 지원** (사업 공고(~4.14) 중으로 5월 이후 본격 기술주치의 파견)

○ **(출연(연) 애로기술 지원)** 화상회의 등을 통해 맞춤 상담 지원 등 **코로나 19로 매출이 하락한 기업 대상 시급한 애로기술 해결** 및 공정개선 지원

* 핵융합연 중소기업 애로기술지원, KIST scale Up 플랫폼 사업, 한의학연 영세·중소기업 연구개발기술지원, 생기원 단기 애로기술 해결지원 사업 등 자체예산으로 활용

○ **(과학기술인 컨설팅 지원) 중소기업에서 희망하는 기술컨설팅** 수요를 받아 적합한 **고경력 과학기술인을 매칭**해주는 사업 진행 중('20년 모집 공고를 완료하고 100여 과제 선정예정)

- '20년에 한하여 고경력 과학기술인 기술멘토링에 대한 중소기업의 부담금(10%)을 한시적으로 면제

Ⅲ. 기대효과

○ 참여기업 부담금 완화 : **약 133억원** 규모의 지원 효과

※ 과기정통부 1차관실 R&D 중소-중견기업 지원예산 1,693억원 규모 기준(추정)

○ 정부납부기술료 : **약 50억원** 규모의 지원 효과

○ 인건비 산정 기준 완화 : **최대 1,218억원** 규모의 지원 효과

○ 출연(연)의 기업 지체상금 면제 : '19년 기준 **13억원** 규모의 지원 효과

⇨ **1,400억원 이상**의 기업 R&D 지원 효과

붙임 지원과제별 담당기관 연락처

세부추진과제	소관부처/서	주관기관	담당자 연락처
1. 참여기업 부담금 완화	연구개발정책과	연구재단	송계영(042-869-6512)
	지역과학기술진흥과	연구개발특구 진흥재단	박후근 팀장 042-865-8830
2. 정부납부기술료	연구개발정책과	연구재단	황호석(042-869-6676)
	지역과학기술진흥과	연구개발특구 진흥재단	박후근 팀장 042-865-8830
3. 인건비 산정 기준 완화	연구개발정책과	연구재단	송계영(042-869-6512)
	지역과학기술진흥과	연구개발특구 진흥재단	박후근 팀장 042-865-8830
4. 출연(연)의 기업 지체상금 면제	연구기관지원팀	출연(연)	출연(연) 개별 기관문의
5. 연구인프라 활용 지원			
6. 정부 R&D 사업화 기업 공공시장 판로구축 지원	연구성과일자리정책과	한국산업기술 진흥협회	이동주 부장 02-3460-9025
	미래인재양성과	KAIST	조성운 042-350-2309
7. 중소기업 애로사항 컨설팅 지원	지역과학기술진흥과	연구개발특구 진흥재단	박후근 팀장 042-865-8830
	과학기술안전기반팀	산기협	이덕성 부장 02-3460-9063